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고병준 의원)

의안 번호	22-102
----------	--------

발의년월일 : 2022. 9. .

발의자 : 강동오, 고병준, 남해석, 신종갑,
이상원,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최은하, 한선미

1. 개정이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해 두는 공유재산 심의회
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효율성과 공정성
을 부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구의원이 포함되도록 신설(안 제3조)
- 나. 위원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범위 명확화(안 제3조)

3.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3

4. 조 례 안 : 붙임

5. 예산조치 : 없음

6. 기타사항

가. 관계법령: 불임

나. 입법예고: 2022. 9. 13. ~ 9.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다음”을 “다음”으로,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민간위원”을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마포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1명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생략)</p> <p>③ 위원은 <u>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민간위원으로</u>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1. ~ 3. (생략)</p> <p>④ (생략)</p> <p>⑤ <u>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⑥ (생략)</p> <p>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u>마포구</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다음</u> -----</p> <p>-----</p> <p>----- <u>고려하여</u> -----</p> <p>----- . -----</p> <p>----- .</p> <p>1. <u>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의원 1명</u></p> <p>2. <u>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속 5급이상 공무원</u></p> <p>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u>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u></p> <p>----- . --- <u>위촉직 위원</u> -----</p> <p>----- .</p> <p>⑥ (현행과 같음)</p> <p>⑦ ----- <u>민간위원-</u></p>

소속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에게
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⑧ ~ ⑩ (생략)

-----.

⑧ ~ ⑩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2. 4. 21.]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관 계 법 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3. 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기획재정국 재무과 손경화
연 락 처	02-3153-8605